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36

발의연월일: 2020. 8. 13.

발 의 자 : 윤영덕 · 김경만 · 강민정

이용우 · 송갑석 · 기동민

조오섭 • 이용빈 • 진선미

인재근 • 이형석 • 위성곤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5년,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3년이 지나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복귀할 수 있음.

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임원이 3년 또는 5년 뒤에 학교로 다시 복귀하더라도 해당 비위로 인한 학내 갈등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복귀 금지 기간을 연장하여 일정 기간 사립학교의 안정적인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,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7항 및 제22조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"5년"을 각각 "10년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3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호의 1에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에"로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20조의2에따라"로, "5년"을 "10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5년"을 "10년"으로 한다.

3. 제54조의2의 해임요구에 따라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7항 및 제22조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1條(任員選任의 制限) ① ~	第21條(任員選任의 制限) ① ~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⑦
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	
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	
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	
어야 한다.	<u>.</u>
1.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	1
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	
<u>5년</u> 이 경과한 자	<u> 10년</u>
2.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	2
된 날부터 <u>5년</u> 이 경과한 자	<u>10년</u>
3.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	3
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	
부터 <u>3년</u> 이 경과한 자	<u>5년</u>
제22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<u>각</u>	제22조(임원의 결격사유) <u>각</u>
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	호의 어느 하나에
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	2. <u>제20조의2에 따라</u>
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	<u>10</u>
로서 <u>5년</u> 이 경과하지 아니한	<u>년</u>

자

- 3.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
- 4.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<u>5년</u>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
- 5. (생략)

<u>3.</u>	제5	4조의	2의	해	임요구	에	따
	라 ㅎ	내임된	자트	린서	5년이	경	과
	하지	아니	한 <i>겨</i>	\ }			
1							

ł.	_	 _	_	_	_	_	_	-			_	_	_	_	_	_		 -	_	_	_	_	_	_	_	_
-		 	_	_	_	_	_		- <u>]</u>	[0	ļ	<u></u>	_	_	_	-	 	_	_	_	_	_	_	_	_

5. (현행과 같음)